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1]

출력하기

[별표 1] <개정 2010.9.17>  
 바이오에너지 등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기준 및 범위
바이오에너지	기준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 제1호 또는 제2호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된 경우에는 생물유기체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바이오에너지로 본다. 범위 1.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바이오가스, 바이오에탄올, 바이오액화유 및 합성가스 2. 쓰레기매립장의 유기성폐기물을 변환시킨 매립지가스 3. 동물·식물의 유지(油脂)를 변환시킨 바이오디젤 4. 생물유기체를 변환시킨 펄프, 목재칩, 펠릿 및 목탄 등의 고체연료
석탄을 액화·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석탄을 액화 및 가스화하여 얻어지는 에너지로서 다른 화합물과 혼합되지 않은 에너지 범위 1. 증기 공급용 에너지 2. 발전용 에너지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에너지	기준 1. 중질잔사유를 가스화한 공정에서 얻어지는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하여 얻어지는 에너지 ※ “중질잔사유”란 원유를 정제하고 남은 최종 잔재물로

		서 감압증류 과정에서 나오는 감압잔사유, 아스팔트와 열분해 공정에서 나오는 코크, 타르 및 피치 등을 말한다.
	범위	합성가스
폐기물 에너지	기준	1.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을 변환시켜 얻어지는 기체, 액체 또는 고체의 연료 2. 제1호의 연료를 연소 또는 변환시켜 얻어지는 에너지 3. 폐기물의 소각열을 변환시킨 에너지 ※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가 아닌 석유제품 등과 혼합되는 경우에는 각종 사업장 및 생활시설의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부분만을 폐기물 에너지로 본다.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2]

출력하기

[별표 2] <개정 2010.9.17>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제15조제1항제1호 관련)

해당	2011 ~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연도	2012								이후
공급의무	10	11	12	13	14	15	16	18	20
비율(%)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3]

출력하기

[별표 3] <개정 2010.9.17>  
연도별 의무공급량의 비율(제18조의4제1항 관련)

해당 연도	비율(%)
2012	2.0
2013	2.5
2014	3.0
2015	3.5
2016	4.0
2017	5.0
2018	6.0
2019	7.0
2020	8.0
2021	9.0
2022 이후	10.0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4]

출력하기

[별표 4] <개정 2010.9.17>

신·재생에너지의 종류 및 의무공급량(제18조의4제3항 관련)

- 1. 종류: 태양에너지
- 2. 연도별 의무공급량

해당 연도	의무공급량 (GWh)
2012	263
2013	552
2014	867
2015	1,209
2016 이후	1,577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5]

출력하기

[별표 5] <신설 2010.9.17>  
과징금의 금액(제18조의10 관련)

1. 일반기준

과징금의 금액은 업무정지기간에 따라 산정하며, 업무정지기간은 법 제12조의10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준에 따라 부과되는 기간을 말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업무정지기간	과징금(단위: 만원)
1. 법 제12조의8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2,000 4,000
2. 법 제12조의9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행 기간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12조의10 제2항	1개월 이하 1개월 초과 ~ 3개월 이하	3,000 5,000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6]

출력하기

[별표 6] <신설 2010.9.17>

성능검사기관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21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법령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1호	지정취소	-	-	-
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받은 날부터 1년 이상 성능검사 업무를 시작하지 않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능검사 업무를 중단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2호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법 제15조 제2항제3호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1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3개월	성능검사 업무 일부정지 6개월	지정취소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7]

출력하기

[별표 7] <신설 2010.9.17>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의 신고기준(제25조제1항 관련)

에너지원의 종류별	자본금 및 기술인력
1. 태양에너지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건축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2. 풍력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3. 지열에너지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2명 이상
4. 설비 설치 대상이 되는 에너지	

너지원이 두	가. 자본금 1억원 이상	
종류 이상인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금속·화공 및 세라믹·	
경우	전기·토목·건축·에너지·환경 분야의 기사 3명 이상	
-----		

별표/서식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 8]

출력하기

[별표 8] <신설 2010.9.17>  
과태료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되는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법령	과태료	
		1회 위반	2회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비인증을 받은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1호	1,000만원	1,000만원
나. 건축물인증기관으로부터 건축물인증을 받지 않고 건축물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건축물인증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법 제35조 제1항제2호	1,000만원	1,000만원
다.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설비인증 표시를 받지 않고 설비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설비인증	법 제35조 제1항제3호	500만원	1,000만원

을 받은 것으로 홍보한 경우			
-----------------	--	--	--